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63622 부당이득금
원 고	1. 파산자 [redacte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파산자 [redacte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3. 파산자 [redacte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4. 파산자 [redacte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5.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 고	[redacted]도
변 론 종 결	2014. 11. 14.
판 결 선 고	2015. 1.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파산자 [redacte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66,706,10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원, 원고 파산자 [redacte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55,517,791원, 원고 파산자 [redacte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97,213,408원, 원고 파산자 [redacte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55,517,791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redacte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08,248,9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redacted]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일대를 재개발하는 이른바 '[redacted]시 [redacted]동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및 주식회사 [redacted](이하에서는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저축은행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 55,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며, 한편 2009. 11. 11. [redacted]너스에 대한 대출 및 그 대출채권과 그에 수반하는 권리에 대한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redacted]차 유한회사(이하 '[redacted]남'이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위 사업자금을 [redacted]남에 대출하고, [redacted]남이 다시 위 사업자금을 [redacted]너스에 대출하였다.

다. [redacted]너스는 2009. 11. 24. [redacted] 주식회사(이하 '[redacted]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redacted]너스를 위탁자, [redacted]신탁을 수탁자, [redacted]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같은 날 [redacted]남과 사이에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redacted]신탁은 위 질권 설정에 동의하였다. 한편 2010.경 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목적 부동산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

라. [redacted]남은 위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redacted]너스에 대한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위 신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redacted]신탁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1]를 청구하였고,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2012. 3. 27. [redacted]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3,638,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2012. 3. 30. 피고(수임관청 :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게 이 사건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이를 기준으로 한 지방교육세[2]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저축은행들 중 [redacted]은행, [redacted]은행, [redacted]은행, [redacted]은행 및 [redacted]은행(이하에서는 '[redacted]은행 등'이라 한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 지분 비율과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수 지분 비율	과세표준	취득세(1천분의 40)	지방교육세
[redacted]은행	100분의 21.83	13,892,175,400원	555,687,016원	55,568,702원
[redacted]은행	100분의 7.27	4,626,482,600원	185,059,304원	18,505,930원
[redacted]은행	100분의 12.73	8,101,117,400원	324,044,696원	32,404,470원

1) 이는 사인인 수탁자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적인 처분행위를 통상적으로 이르는 호칭에 불과하다.
2) 아래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과세표준 × (취득세율 40/1000 - 20/1000) × 20/100(다만, 편의상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redacted]은행	100분의 7.27	4,626,482,600원	185,059,304원	18,505,930원
[redacted]은행	100분의 27.27	17,354,082,600원	694,163,304원	69,416,330원

바. 한편 [redacted]은행 등은 각 파산선고를 받아 각 파산관재인으로 [redacted]공사가 선임되었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redacted]남은 [redacted]은행 등이 [redacted]너스에 대한 대출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일뿐 실체가 없는 대출금의 중간 전달자(일종의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대주인 [redacted]은행 등이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redacted]은행 등이 수탁자인 [redacted]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의 비율에 의한 취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바람에 결국 [redacted]은행은 166,706,104원(= 취득세 138,921,754원 + 지방교육세 27,784,350원), [redacted]은행은 55,517,791원(= 취득세 46,264,826원 + 지방교육세 9,252,965원), [redacted]은행은 97,213,408원(= 취득세 81,011,174원 + 지방교육세 16,202,234원), [redacted]은행은 55,517,791원(= 취득세 46,264,826원 + 지방교육세 9,252,965원), [redacted]은행은 208,248,991원(= 취득세 173,540,826원 + 지방교육세 34,708,165원)을 각 과납[3]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이 [redacted]은행 등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및 납부한 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거나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에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도 있는 이상 위와 같이 [redacted]은행 등이 과납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redacted]남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명의와 실질을 달리하는 도관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게다가 법인격부인론을 이 사건과 같은 세법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redacted]남은 [redacted]너스에 대한 대출 및 그 대출채권과 그에 수반하는 권리에 대한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가진 법적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봄이 마땅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한 [redacted]남이 아닌 대주인 [redacted]

3) 취득세 과납분 계산식 : 과세표준 × (40/1000 - 30/1000)
지방교육세 과납분 계산식 : {과세표준 × (40/1000 - 20/1000) × 20/100} - {과세표준 × (30/1000 - 20/1000) × 20/1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은행 등을 실질적인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redacted]은행 등을 실질적인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edacted]남은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redacted]너스에게 '[redacted]시 [redacted]동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이나 이 사건 신탁원부만으로 이러한 점을 쉽사리 확인할 수 없는 점, [redacted]은행 등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함에 있어 수임관청을 포함한 피고측로부터 어떠한 유도나 종용 또는 권유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redacted]은행 등은 피고측에 대하여 이에 관하여 질의를 한 바도 없다), [redacted]은행 등은 금융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지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농지 이외의 부동산 유상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대한 일종의 특례규정으로서,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삭제된 항목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소가 위 신고납부일인 2012. 3. 30.로부터 2년이 지난 2014. 4. 28.이 되어서야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를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당연무효로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종[redacted]

판사 [redacted]미[redacted]

판사 [redacted]희[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별지

부동산 표시

1.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공장용지 5,466.8㎡

2. 같은 동 [redacted] 공장용지 6,692.9㎡

3. 같은 동 [redacted] 공장용지 6,623.2㎡

4. 같은 동 [redacted] 공장용지 4,768.4㎡. 끝.